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5848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징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8구합614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게 한 수시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9,850,28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게 한 수시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9,850,280원(가산세 포함)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쳐 쓴다.

순번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일자
1	F은행 예금채권	2006. 9. 20.	2009. 7. 14.
2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	2009. 5. 7.	
3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	2011. 5. 30.	2012. 2. 14.
4	자동차(D)	2016. 9. 26.	2019. 3. 15.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경과하기 이전인" 다음에 "2006. 9. 20.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F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가 2009, 7. 14. 해제되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압류의 대상이 된 F은행 예금채권과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은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과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13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는 국세징수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F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한 2006. 9. 20.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가 2007. 12. 31. 개정되었으므로 F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부칙<제8832호, 2007. 12. 31>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는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나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7.과 2011. 5. 30. 원고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당시 원고가 가입한 보험 중 피보험자 G인 H보험(만기환급형)의 납입액이 3,371,500원, 피보험자 I인 어린이보험의 납입액이 1,581,000원, 피보험자 I인 H보험(만기환급형)의 납입액이 1,264,800원인 사실(원고는 위 3개 보험에 대하여 2008년 9월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한편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은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그 합산액이 400만 원 미만의 보장성보험의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을나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보장성보험 환급금이 압류될 당시 위 3개 보험의 만기환급금의 합계가 2009. 5. 7. 기준 4,402,090원, 2011. 5. 30. 기준 4,402,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체국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환급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압류한 원고 소유의 자동차가 2018. 12. 28. 폐차처분되고 2019. 3. 15.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압류한 자동차가 폐차되고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